제828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제정안(국토교통부)	1.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신설)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보증약관의 내용 중 중요사항(보증이행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1.비중요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1.구매시 경비지원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수출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신설(신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사유를 구분하여 사유별 별도 의무운행기간 및 회수요율 신설 -(2년) 기존 2년적용은 현행유지(보조금 회수요율 동일) -(5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적용 ※ [별표21의2] 의무운행기간 5년의 경우 적용되는 회수요율 신설	1.비중요
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개정안 (소방청)	1.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강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5조제3항제9호, 제8조제1항	1.비중요
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1.비영리법인이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지정 및 취소요건 규정(신설) 법정법인 외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여 법정법인과 유사한 권한·의무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혜택을 부여하고, 지정 후 요건 미충족 시 지정취소	
5	국유재산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1.사용허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 제한 (신설) 사용자의 불법·부당한 사유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제한됨	1.비중요
6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1.국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 부담 (신설) 국유재산 매각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및 측량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매수신청자가 매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매수신청자가 부담(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도입·시행 중인 제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1.비중요
7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물류창고업 등록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신설) 물류창고 내 화재예방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으로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관리기준(별표)을 추가하고 등록 후 매년 12월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함	1.비중요
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아동안전교육이 가능한 외부전문가 자격 요건(신설) ○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종사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중이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	
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고용노동부)	1.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준수사항(신설) o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받은 사실,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및 내용,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의 산정기준, 가사서비스 이용절차,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법에 따른 손해배상수단 및 최대 배상한도,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 고충처리요청수단, 직업소개와 겸업 여부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 2.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필수규정사항(신설) o 이용자와 제공기관간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에 가사서비스 내용, 가사서비스 내용 변경절차, 가사서비스 제공일시 변경 절차,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 취소 절차,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신설) o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한 가사근로자의 규모, 임금수준, 이용료,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 실시 가능 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신설) o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함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제공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운영 방안 포함) ② 정관 사본 ③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④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 영사가 확인한 서류 5.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사항의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신설) ㅇ (변경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변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무실 소재지 변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변경신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인증서 사본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제공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 종류의 변경 및 추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② 손해배상수단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게 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따라 변경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변경인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6.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휴·폐업 신고(신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휴업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ㅇ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공개	
1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노동부)	1.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인증요건(신설) o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① 가사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②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대상인 자에 한한다) ③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o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둘 것(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③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④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 2.가사근로자 근로조건(신설) o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근로제공 가능지역을 명시하여야 함 o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서면 합의로 변경되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o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준달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의 매출액, 기준 달 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전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o (유급휴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상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할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야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 o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15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11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개정안 (해양수산부)	1.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 상 국제협약 반영(강화) o 재료 및 컨테이너의 주요치수(안 제3조 및 제4조) 컨테이너의 주요치수에 대한 기준 및 폐지된 한국산업규격을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으로 대체 o 컨테이너의 설계(안 제5조) 별도로 설계된 겹침적재 하중으로 형식승인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전승인판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 o 컨테이너 각부의 구조(안 제6조) 컨테이어의 모서리쇠의 구조는 국제표준에 적합해야 하고, 각 부 구조는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o 포크포켓 및 터널리세스의 설치(안 제7조) 포크포켓 및 터널리세스의 위치, 치수 및 허용공차는 국제표준에 따르도록 함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형식승인 시험(안 제8조)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와 ISO 표준 컨테이너의 종류별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을 정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안 별지) 별표 1~2 및 별표 4~5 삭제, 별표 3 및 별표 6을 국제협약 및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개정	
1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신설) ○ 평가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마련 2.대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의무(신설) ○ 합리적 이유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되는 사업자를 '대기업'으로 규정 3.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신설) ○ 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기준을 마련 4.데이터거래사 교육(신설) ○ 데이터거래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 구체화 5.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구체화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6.협회의 설립 요건(신설) ㅇ 협회의 설립 요건 규정	